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제20098호, 2024.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에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함(안 제7조)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u> 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 ----- ----- <u>감정평가법인등</u> ----- ----- ----- ----- -----
7. ~ 10. (생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